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2024. 9. 3(화) 10:00

### 제25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
# 검 토 보 고 서

##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행정안전국 주민안전과 소관)



# 행정재경위원회

전문위원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#### 1. 제안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579호

나. 제 출 자 : 정재동 의원

다. 제출일자 : 2024. 8. 22.

라. 회부일자 : 2024. 8. 22.

#### 2. 제안이유

금천구에서 발생한 일반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조속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에 기여하고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
다. 조례의 지원 대상과 지원 제외 대상을 규정함(안 제4조)

라. 화재피해주민을 위한 지원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(안 제5조)

마.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)

#### 4. 관계법령

- ○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4조
- ○「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」제5조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·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하게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총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주요내용으로는
  - 안 제2조에서는 '화재피해주민'을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하고
  -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함.
  -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그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긴급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.
  - 안 제5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각각 규정함.
- 최근 5년간 금천구 화재발생 및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, 5년동안 총 792건이 발생하였고, 인명피해는 사망자 6명, 부상자 40명, 추산 재산 피해액은 34억 8.198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남.

※ 최근 5년간 금천구 화재 발생 및 피해 현황(출처 : 서울시 통계)

구분	<b>화재발생</b> (건)				<b>사망자</b> (명)	<b>부상자</b> (명)	피해액
	소계	실화	방화	기타	<b>~16~1</b> (6)	<b>TÖ^I</b> (O)	(천원)
계	792	712	17	63	6	40	3,481,982
2019년	141	129	5	7	-	4	671,767
2020년	127	108	6	13	2	9	419,587
2021년	118	108	1	9	2	8	825,255
2022년	214	193	1	20	1	14	934,792
2023년	192	174	4	14	1	5	630,581

- 본 조례는 화재피해자들이 가능한 한 조속히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음.
- 참고로 서울시 3개 자치구(양천, 광진, 송파)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,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붙임: 관계법령 1부. 끝.

##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[시행 2024. 7. 17.] [법률 제20030호, 2024. 1. 16., 일부개정]

- 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·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8. 6., 2023. 5. 16.>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,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2. 3.>
 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 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24. 1. 16.>
  -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 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, 그 소재지를 관 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(이하 "시ㆍ도"라 한다)와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· 군 · 구(자치 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2. 22., 2014. 12. 30., 2015. 7. 24., 2019. 12. 3., 2024. 1. 16.>

###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2. 6. 9.] [법률 제18204호, 2021. 6. 8., 제정]

제5조(화재조사의 실시) ①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(이하 "소 방관서장"이라 한다)은 화재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화재 조사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- 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.
- 1. 화재원인에 관한 사항
- 2. 화재로 인한 인명·재산피해상황
- 3.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
- 4. 소방시설 등의 설치 · 관리 및 작동 여부에 관한 사항
- 5. 화재발생건축물과 구조물, 화재유형별 화재위험성 등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